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나610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나6102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19가단27236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양태훈, 최건, 이동현

피고, 항소인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양종관

변론종결 2022. 1. 14.

판결선고 2022. 2. 11.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19가단27236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대하여 2018. 11. 28.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계약을 14,152,96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52,9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3쪽 6번째 줄부터 같은 쪽 11번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이 사건 계약자 변경 당시 D은 순천시 H 소재 건물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150,000,000원과 위 해약환급금 8,030,137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채무로는 원고의 위 가항 기재 채권을 비롯하여 위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치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G기관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제1심판결 3쪽 13번째 줄의 ‘무자력 상태인 D이 유일한 재산인’을 ‘채무초과상태인 D이 자신의 재산인’으로 고친다.다. 제1심판결 4쪽 7, 8번째 줄의 ‘따라서, 채무자인 D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해 주기로 한 약정은, D의 당시 유일한 재산인’을 ‘따라서 채무자인 D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해 주기로 한 약정은, D의 적극재산인’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연정, 판사 허준서, 판사 강희석

별지